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92 발의연월일: 2025. 5. 23.

발 의 자: 박범계 • 박지원 • 이성윤

박균택 · 김태년 · 김용민

박희승·장경태·허 영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신분은 판사· 검사와 동일한 특정직공무원임.

헌법연구관은 판사·검사와 같이 변호사 자격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외에도, 외국의 입법과 판례를 조사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등 헌법재판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대학교수 등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력자 등도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에 포함하고 있음.

업무성격(연구업무)이 유사한 국·공립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이며, 신분과 자격요건에서 유사한 판사의 정년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 세로 상향된 반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2003년도에 정년 규정이 신설 된 이후 현재까지 60세로 변동이 없는 상태임. 한편, 매년 접수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심판사건의 난이성·비정형성 등의 심화로 헌법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역할은 대단히중요함.

그러나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 불과하다보니 정년이 상대적으로 긴 국공립대학 교수 및 판사로의 이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이직한 16명의 헌법연구관 중 12명이대학교수(6명) 및 판사(6명)로 이직하였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연구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향상하고 자함(안 제19조제7항).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생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현		
략)	행과 같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	⑦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			
년은 <u>60세</u> 로 한다.	<u>65세</u>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